

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

양승현 연구위원

약

최근 1년간 총 9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그 중 5건이 소관위 심 사를 마친 상태임.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등 관련 설명의무 도입.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. 상호금융권역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. 신용보험 권유 허용, 횡재성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부과징수, 화 상통화 판매규제 등이 있음
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. '금융소비자보호법') 제정 이후 현재1)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35건으로 이 중 올해 6월 공포된 개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. 이 중 최근 1년간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총 9건임
 - 법 제정 직후인 2020년에는 사후적 구제장치나 영업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면2)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, 고령화, 고금리 지속, 가계부채 등 금융을 둘러싼 제반 사회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됨3)
 - 그중 금융상품 방문·전화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(4)이 유일하게 올해 국회를 통 과해 시행되었는데,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었음
 - 이하에서는 2023년 발의된 개정안5)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
- 금융위원회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 수립·시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(최승재 의원안, 제2119010호)
 - 제안 취지는 보이스피싱,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교육을 통 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 -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범죄 피해 대응도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금융교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,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법률이 다양한데 금융위원회가 일률적 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()

^{1) 2023. 12. 13.} 현재 기준임

²⁾ 양승현(2020), 「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」, 『KIRI 보험법리뷰』, 제7호

³⁾ 양승현(2021), 「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」, 『KIRI 보험법리뷰』, 제14호; 양승현(2022), 「2022년 금융소 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」, 『KIRI 보험법리뷰』, 제20호

⁴⁾ 방문판매원 명부관리(법 제16조의2),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마련, 야간 방문연락 금지(법 제21조의2), 전속관할(법 제66조의2) 등의 내용이 포함됨(2023. 7. 11. 법률 제19532호로 개정되어 2023. 10. 12.부터 시행)

^{5) 2022. 12. 15.~2023. 12. 13.}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말함

- 설명의무 대상에 금리인하요구권(대출성 상품 관련) 및 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(양정숙 의원안, 제2119368호)
 - 금리인하요구권⁷⁾ 및 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⁸⁾은 금융소비자의 법적 권리임에도 그 행사 건수가 저조한바, 금융상 품판매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 - 이에 대해 금융당국 및 업계는 개정안의 필요성 및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, 소비자 편익 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 인 것으로 보임9)
 -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개별법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 규율의 실익이 낮고 중복 규제에 따 른 혼선이 우려되는 데다,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는 실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판매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포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
 - 또한 개인신용정보열람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판매업자가 무료열람권에 대해 안내 하면 (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해)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,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적용되는 것 이므로 그 대상에 금융상품과 관련성이 낮은 무료열람권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

○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(박재호 의원안, 제2120428호)이 발의됨

- (보호대상) 본 개정안은 2022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4건의 개정안1이과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으나 보호대상을 노인 외에 미성년자, 장애인, 외국인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
- (차별금지) 현행법 제15조는 성별, 학력, 장애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 지하는데, 이에 더해 '연령, 국적, 재산'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대상에 추가함
 - '재산'과 '국적'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견을 제시한바,11) 외국인의 경우 금융거래에서 내국인과 다르게 규 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.12) 판매업자 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계약을 권유해야 하며, 고액자산 가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, 신용평가 등 현실적으로 재산에 따른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
 - '연령'에 대해 과거 같은 내용의 개정안13)이 발의됐을 때 연령은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그에 따 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바 보장성 상품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'정당한 사유'가 있으면 금융소비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

⁶⁾ 고상근(2023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시책 수립·시행 의무 부여 등〉」, 국회 정 무위원회, pp. 10~11

⁷⁾ 대출 후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보험업법 제110조의3을 비롯하여 은행법 제30조의2,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금융업권 별로 규제하고 있음

⁸⁾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연 3회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정보를 무료로 교부·열람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)를 말함

⁹⁾ 고상근(2023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설명의무에 금리인하요구권·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 추가〉」, 국회 정 무위원회, pp. 10~12

¹⁰⁾ 홍성국 의원안(제2115381호), 이상헌 의원안(제2115528호), 최형두 의원안(제2116081호) 및 임종성 의원안(제2116356호)

¹¹⁾ 고상근(2023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치별금지 및 보호 규정〉』, 국회 정무위원회, pp. 4~6

¹²⁾ 예컨대,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이 우리 국민의 자국 내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인에게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, 그 밖에도 금융상품 취득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음(고상근(2023), "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(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 규정)」, 국회 정무위원회, pp. 4~5)

¹³⁾ 홍성국 의원안(제2115381호), 임종성 의원안(제2116356호)

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할 수 있음14)

- (정책수립) 금융위원회에 금융취약계층(노인, 미성년자, 장애인, 외국인 등)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해 판매업자등에 대해 금융피해사례 및 의심사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- (내부통제기준)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토록 함 5
-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 건 발의됨(윤창현 의원안, 제2120443호, 박덕흠 의원안, 제2121468호)
 - 동일 기능,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신협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 - 2022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¹⁶⁾되었는데, 당시 행정안전부가 신용·공제사업 모두에 대해 감독 권한을 보 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갖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음
 - 윤창현 의원안은 농·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규정하여 규제를 적용하되 현재의 감독·법 령체계를 존중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17)
 - 박덕흠 의원안은 농·수산업협동조합만을 금융회사에 추가하여 규제하는 내용으로 확대 범위가 보다 제한적임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험(생명·손해)¹⁸⁾을 함께 권유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됨(최승재 의원안, 제2121399호)
 - 현행법상 대출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19)되고 있는바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 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자 함
 - 구체적으로는 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소비자와 금융상품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되. 신용보험20)의 경우는 그 예외로 명시하고자 함
 - 한편, 2022년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²¹⁾ 동 개정안은 신용보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 금지(법

¹⁴⁾ 고상근(2022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〉」, 국회 정무위원회, p. 22

¹⁵⁾ 참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'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'을 규정하고 있음(감독규정 제9조 제2항 [별표2] 8)

¹⁶⁾ 김병욱 의원안(제2116173호)

¹⁷⁾ 다만,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

¹⁸⁾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험으로 유가족의 빚 대물림 또는 신용 하락을 방지하고 신용보 강을 통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효용이 있음

¹⁹⁾ ① 중소기업(및 그 대표자)·개인신용평점 하위 10%·피성년(한정)후견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② ①을 제외한 계약 중 소비자가 금융상품판 매업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(예: 보험료)이 대출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(예: 대출금)의 1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·후 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됨(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마목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4항 제1호)

²⁰⁾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대출 금액 중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·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(안 제20조 제2항)

²¹⁾ 윤관석 의원안(제2113721호)

제21조)²²⁾의 예외로 규정한바, 신용보험에 대한 규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대출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(제20조 제1항)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

-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용보험을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 및 대출 관련 신용보험 권유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다만 금융당국은 현행법규상으로도 신용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,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최근 민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³⁾
 - 국내외에서 신용보험 내지 신용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, 낮은 보장률, 판매 강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난바, 신용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²⁴⁾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'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'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·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(양정숙 의원안, 제2123613호)
 - 금융 피해에 취약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따른 금융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책무²⁵⁾보다 한층 강화된 정보제공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금융상품 계약 단계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
 - 금융거래에 있어 장애인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나,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는 노인, 미성년자, 외국인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²⁶⁾
- 금융회사가 이른바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는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(김성주 의원안, 제2125396호)
 - 구체적으로는 금리변동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%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초과이익의 40%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임
 - 일정한 경우(대통령령에 위임)에는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함
 -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외부적 요인(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물가·고금리 상황 지속)으로 얻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
 - 동 개정안은 이른바 횡재세(Windfall tax)²⁷⁾ 논의와 관련된 것인바, 횡재세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

²²⁾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

²³⁾ 고상근(2023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소비자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규정〉』, 국회 정무위원회, p. 13

²⁴⁾ 고상근(2023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소비자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규정〉』, 국회 정무위원회, pp. 13~14; 이용준(2022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〉』, 국회 정무위원회, p. 10

²⁵⁾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5.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

²⁶⁾ 고상근(2023)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〈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할 책무 부과〉』, 국회 정무위원회, pp. 8~9

²⁷⁾ Windfall은 바람에 떨어진 과실이라는 뜻에서 유래해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를 뜻함

요인(외부 사건)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²⁸⁾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업들이 벌어들인 큰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도입²⁹⁾됨

- 최근 국제유가 및 식량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유럽 주요국 및 미국 등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채택되는 등³⁰⁾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현재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음
-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입법은 법률적, 시 장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³¹⁾
 - 이중과세,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, 형평성 및 경직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, 유럽중앙은행, 국제통화기 금에서도 횡재세 도입은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제 악영향을 경고한바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
 - 아울러 횡재세는 해외에서도 소수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는데, 주로 에너지기업이나 정유회사 등에 대해 일회적, 한시적으로 운영할 뿐 개정안과 같이 은행 등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예가 없다는 점도 제 시됨
-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, 금융당국, 금융업계, 학계,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
- 화상권유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를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(전봉민 의원안, 제2125622호)
 - 구체적으로 (i) 화상통화, 컴퓨터시스템 등 매체를 활용해 상호 간에 대면하여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,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(화상권유판매) 및 (ii)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(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)에 대해 방문·전화권유판매 규제³²⁾를 적용하는 내용임
 - 제안 취지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³³⁾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
 - 생각건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방문·전화권유판매 규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바, 방문·전화판매가 아닌 비대면 모집 전반에 동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
 -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, 보험업법에서 비대면 모집 수단에 따라 특성에 맞게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²⁸⁾ 이세진·황성필(2023), 「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」, 『이슈와 논점』, 제2076호, p. 1

²⁹⁾ 김재경·정훈(2023), 「초과이익과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」, 『조세법연구』, 제29-2호, pp. 353~354

³⁰⁾ 영국과 이탈리아는 석유사업 부문에 대해, 스페인과 헝가리는 은행까지 확대해 횡재세를 입법함(김신언(2023), 「우리나라 횡재세(windfall tax)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」, 『세무와 회계 연구』, 통권 제32호, p. 7

^{31) 2023. 11. 28.}자 정무위원회회의록(법안심사제1소위원회) p. 38

³²⁾ 각주 4

³³⁾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통한 모집이 허용되고 있음(영 제43조 제4항)

〈표 1〉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

번호	의안번호	의안명(대표발의자)	제안일자	주요 내용	진행 상황
1	2119010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승재 의원)	2022. 12. 20	•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 근거 마련	소관위심사
2	2119368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정숙 의원)	2023. 1. 9	• 금리인하요구권 등 행사방법 및 절차 설명의무	소관위심사
3	2120428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재호 의원)	2023. 3. 6	 금융취약계층 보호(차별금지, 정책수립, 피해 사례보고, 내부통제기준) 	소관위심사
4	2120443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창현 의원)	2023. 3. 6	•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법 적용대상 확대	소관위접수
5	2121399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승재 의원)	2023. 4. 14	• 대출계약 시 신용보험(생명·손해) 권유 허용	소관위심사
6	2121468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 의원)	2023. 4. 20	• 농·수산업협동조합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	소관위접수
7	2123613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정숙 의원)	2023. 8. 2	• 장애인 보호(성실·정확한 정보전달)	소관위심사
8	2125396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주 의원)	2023. 11. 14	• 횡재성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부과·징수	소관위접수
9	2125622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봉민 의원)	2023. 11. 28	• 화상통화 등 활용 판매 규제 근거 마련	소관위접수